

## 경 영 공 시

본 농(축)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아 래

1. 공시사유 : 농업협동조합법 제145조제2호에 의한 조합감사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(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5호)

### 2. 공시내용

- 대 상 : 전무직무대리 성제민외 11명
- 경 위 : 무자격 조합원 정리 이사회 부당 의결
- 주요내용 : 비상임이사 윤○○ 견책, 비상임이사 박○○ 견책, 비상임이사 이○○ 견책, 비상임이사 김○○ 견책, 비상임이사 최○○ 견책, 비상임이사 심○○ 견책, 비상임이사 송○○ 견책, 조합장 이○○(퇴임자) 견책, 전무직무대리 성○○ 견책, 상무 최○○(퇴사자) 주의촉구, 과장 김○○ 견책, 과장 대리 김○○ 견책
- 수지에 미치는 영향 : 없음.

2018년 5월 16일

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장 (직인)

